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명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76
----------	-----

발의연월일: 2019년 11월 04일

발 의 자: 이명순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 및 포상(안 제3조 ~ 제4조)
- 다. 보조금관련 준용규정(안 제5조)
- 라. 중복지원 금지 (안 제6조)
- 마. 시행규칙 관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포상조례」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31.(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19. 09. 25. ~ 2019. 10. 10., 제출 의견 있음
 - 제3조 제5호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삭제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평창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

[관련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평창군포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①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삭제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숭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외 선행자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평창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3조(지원) 평창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4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명순 의원
연락처	(033) 330 -2503